

'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① 신고안내문 발송

- (신고대상 안내)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.26.(금)부터 5.13.(월)까지 안내문(모바일 또는 서면)을 발송
 - 모든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하고, 모바일 발송 실패자와 모두채움 안내자 중 미열람자에게는 서면 안내문 발송(기신고자 제외)
 - *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,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
 -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.1.(수)~5.6.(월) 모바일 안내문 순차 발송*
 - * 홈택스·손택스에서는 5.1.(월)부터 확인 가능
 -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「모두채움(환급)」 안내문 발송
- (전자신고 운영) 홈택스·손택스·ARS 전화(☎ 1544-9944) 신고 가능하며, 5월은 운영 시간*을 오전 1시까지 연장(ARS는 24시까지)
 - * ① 5.1.~5.30.(5.10. 제외) : 매일 06:00 ~ 다음날 01:00
 - ② 5.10.(원천세 신고종료일), 5.31.(신고 종료일) : 06:00 ~ 24:00

② 성실신고 사전안내

- (성실신고 사전안내) 내·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제공
 -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「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」 안내문을 5.9.(목)부터 모바일로 발송(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)
 - 「신고도움 서비스」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
 - 세무대리인(기장·신고대리)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 조회 가능

3 세정지원

- (납부기한 직권연장) 수출기업·세정지원 패키지 대상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9.2.(월)까지 직권 연장(신고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)
 - *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(2개월 연장): '24. 7. 1.(월) → '24. 9. 2.(월)
 - **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5. 1. ~ 9. 2. 사이에 언제든지 납부 가능
-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, 홈택스·손택스 「신고도움 서비스」 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 가능
- 영세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

대 상	요 건(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)
□ 세정지원 패키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직권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(건설·제조업) 고금리,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(최소 △30%)한 사업자 ▸ (음식업·소매업·숙박업)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과세자 : 매출 급감(최소 △30%) 사업자 - 간이과세자 : 23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 전체
□ 수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'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·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- 다만,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

4 신고도움창구 운영

- (운영방식 변경) 신고도움창구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고 주요 방문자인 모두채움·단순경비율 사업자에 대한 신고도움 집중 제공
- 기준경비율 대상자, 3주택 이상자, 금융소득자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도움 제공 대상에서 제외
 - * 기준경비율대상자 등은 신고안내문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기재 발송
 - 다만 자기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 가능

5 이번 신고 변경 사항

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및 정교화

- (모두채움 대상 확대) 캐디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으로 모두 채움 제공하는 등 총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
- (모두채움 정교화) 복수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 신고세액 정밀 분석을 통해 모두채움 세액 계산 정교화
 -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를 반영하고, 교육비 등 「연말정산 간소화자료」 활용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 적용
 - 모두채움 세액을 확정세액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문구를 강조하고, 모두채움 유형별 색상 구분

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

모두채움(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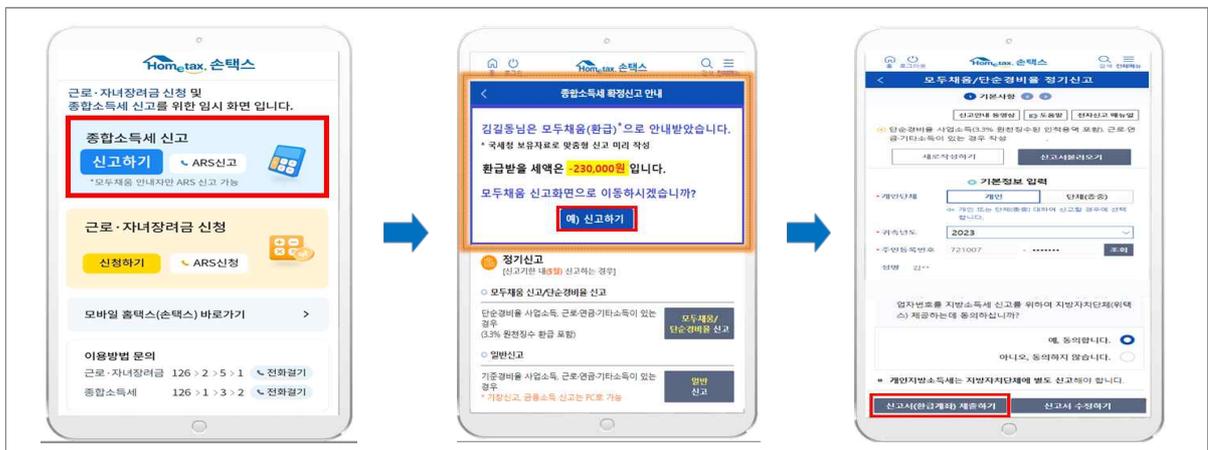
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

모두채움(환급)

손택스 이용 편의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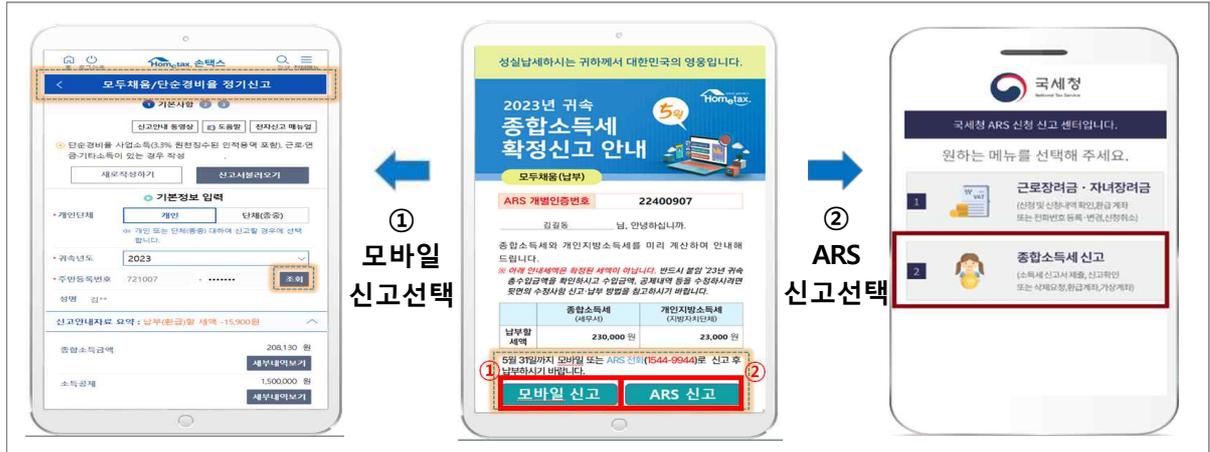
- (맞춤형 신고화면 운영) 손택스 첫 화면에 「소득세 신고하기」 전용 화면을 운영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팝업창 제공(5월 한 달간 운영)
 - ①손택스에 로그인 후 ②안내받은 신고 유형 및 납부(환급)세액을 확인하고 ③납세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로 바로 이동

!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!



- (안내문과 연계)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「모바일 신고」 또는 「ARS 신고」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고 가능

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화면 및 ARS신고 이동



- (기부금 세액공제 수정)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던 기부금 세액공제 입력·수정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

<참고> '23귀속 주요 세법 개정 사항

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(소법§55①)

종 전		개 정	
과 세 표 준	세 율	과 세 표 준	세 율
1,200만원 이하	6%	1,400만원 이하	6%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	15%	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	15%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	24%	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	24%
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	35%	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	35%
1.5억원 ~ 3억원 이하	38%	1.5억원 ~ 3억원 이하	38%
3억원 ~ 5억원 이하	40%	3억원 ~ 5억원 이하	40%
5억원 ~ 10억원 이하	42%	5억원 ~ 10억원 이하	42%
10억원 초과	45%	10억원 초과	45%

○ 적용시기 :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

②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(소법§12, 소령§8의2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시가 9억원 초과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시가 12억원 초과

○ 적용시기 : 2023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

③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(소법§59의2①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(셋째부터 30만원) 공제	<input type="checkbox"/>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(셋째부터 30만원) 공제

○ 적용시기 :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

④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(소령§143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<input type="radio"/>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*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<input type="radio"/> 인적용역* : 수입금액 3천6백만원** 미만 * 쿼서비스배달원, 대리운전기사 등 ** 현재 '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에 포함

○ 적용시기 : 2023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